

[일련번호 : 7]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의 재발급)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무료 대상자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주소변경 칸 부족 사유 등으로 직권재발급한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함에도 회수하지 않았으며, 수입증지 발행을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 내역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재발급 신청일자	수수료		부적정내역
				재발급 사유	수수료 징수	
1			241023	성명변경	5,000원	기존증 반납, 과다징수
2			240408	주소변경칸 부족	5,000원	기존증 반납, 과다징수
3			240403	보안기능추가	5,000원	기존증 반납, 과다징수
4			240216	주소변경칸 부족	5,000원	기존증 반납, 과다징수
5			240116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료	기존증 미회수
6			220328	주소변경칸 부족	5,000원	기존증 반납, 과다징수
7			220218	훼손, 보안기능추가	면제	기존증 미반납, 부과누락
8			220629	보안기능추가	면제	기존증 미반납, 부과누락
9			220617	주소변경칸 부족	5,000원	기존증 반납, 과다징수
10			220519	분실, 지문재등록	면제	기존증 미반납, 부과누락
11			220510	분실, 보안기능추가	면제	기존증 미반납, 부과누락
12			220413	주민등록번호 변경	면제	기존증 미회수
13			220812	주민등록번호 변경	면제	기존증 미회수
14			220708	분실	증지없음	기존증 미반납, 부과누락
15			221123	주민등록번호 변경	면제	기존증 미회수
16			221031	주소변경칸 부족	5,000원	기존증 반납, 과다징수
17			221028	보안기능추가	5,000원	기존증 반납, 과다징수
18			230612	분실, 지문재등록	무료	기존증 미반납, 부과누락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